

대기환경개선법, 신규투자 제약 우려

전경련, 화학기업 평균 16억3440만원 비용 발생 ... 시설운영비 2485만원

<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> 시행으로 수도권 소재 1종 사업장의 추가부담 비용이 평균 44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경련 조사에 따르면, <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> 시행에 대해 조사응답 사업장의 81.6%가 직접적인 비용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며, 이 중 74.2%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

예상되는 피해로는 추가 환경 투자비용의 상승(86.1%), 신·증설 투자의 위축(80.6%), 기업의 경기대응의 어려움(52.8%) 등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신·증설이 필요한 기업의 36.4%가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며, 27.3%는 신·증설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됐고, 21.2%는 중국 등 국외로 이전한다고 응답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했다.

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1종 사업장 3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한 석유 제조 사업장에서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비 400억원, 자동측정기 설치비 30억원 등 430억원과 1년 운영비 16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.

또 다른 금속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비 220억원, 자동측정기 설치비 21억8000만원 등 241억8000만원과 122억5000만원의 운영비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됐다.

업종별로는 금속 제조업종과 폐기물 처리업종, 자동차 제조업의 추가 투자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.

<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>에 따른 추가 투자비용

구 분	최적방지시설 투자비	자동측정기 설치비	소 계	최적방지시설 운영비
음식료 제 조업(5사)	15억6400만원	24억8250만원	40억4650만원	12억698만원
자동차 제 조업(3사)	6억8142만원	65억1333만원	71억9475만원	43억1436만원
전기/가스 등(2사)	42억6475만원	1억1000만원	43억7475만원	5억8812만원
금속 제 조업(2사)	113억500만원	22억8000만원	135억8500만원	62억6038만원
종이 제 조업(9사)	8억3132만원	1억7956만원	10억1088만원	1억5735만원
폐기물 처리업(1사)	39억	34억7000만원	73억7000만원	29억5690만원
화학제품 제조(5사)	7억40만원	9억3400만원	16억3440만원	2485만원

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기업 중 자동측정기 설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이 13사(33.3%)에 달하며, 이 가운데 설치공간 및 부지확보 불가능으로 시설투자가 불가능한 기업이 11사(84.6%)에 달한다는 점이다.

또 대다수 배출업소가 2000년부터 <환경부 고시 2000-9호 제 3조 2항>에 의거해 TMS(Telemetering System/ 굴뚝자동 측정망) 부착을 면제받고자 보일러 연료를 청정연료로 변경한 바 있는데, <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>에서 청정연료 사용시설에 대해 추가로 질소산화물 등의 저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장은 이중부담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.

한편, 기업들은 수도권 대기오염 원인의 80%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동오염원이라고 지적하고 공기 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형평에 맞게 부과해야 수도권대기질 개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.

전경련은 <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> 제정에 앞서 충분히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5/13>